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대상시설의 교통량감축 이행관리제도 도입방안에 관한 검토



황연하



양훈철

1. 배경

1990년 도입된 교통유발부담금제도는 도시교통촉진법상 도시교통정비지역 내에서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로부터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다는 데 근거한다. 이 제도는 당초 날로 심각해지는 교통혼잡 문제를 야기하는 교통유발시설로 하여금 유발하는 한계사회비용만큼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여 실질적으로 교통량 증가를 최소화할 뿐 아니라 부담금을 교통시설개선에 활용하고자 하는 교통투자재원마련 차원에서 출발하였다.

최근 서울시의 경우 대폭적인 대중교통체계개편으로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임으로써 승용차이용을 억제하고 도로혼잡감소를 기대하였으나, 크게 개선되지 않는 이유는 개개의 교통유발시설에서의 차량감축노력이 합해진다 하여도 총교통량의 감소가 수반되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도시환경 오염의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고유가 시대를 맞이하여 에너지 문제가 중대한 현시점에서 교통량 감축을 위한 대책마련은 매우 시급한 문제가 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교통량 감축을 유도하는 교통유발부담금 제도는 부과대상자로 하여금 다른 조세와 별 차별없이 준조세적인 성격으로 간주되어 실질적인 차량감축효과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교통수요 관리와 교통

황연하 : (주)내경엔지니어링 교통연구실, hyh3539@paran.com 직장전화:02-575-7184, 직장팩스:02-574-4958

양훈철 : (주)동립컨설턴트 교통연구부, yhc66@korea.com 직장전화:031-384-7527, 직장팩스:031-384-9642

유발부담금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모색이 요구되고 있다.

현재의 교통유발부담금은 시설물소유자가 세입자들에게 전가할 수도 있고 세입자들은 서로 공동부담하면 총 연간주차료보다 적게되어 부담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또한 교통량 감축활동을 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부담금을 경감해 주며, 이때 경감신청대상시설물에 대해서는 교통량 감축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게 되는 데 이행프로그램의 실효성검증 및 사후관리가 거의 전무하여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고 있다.

이에 실질적인 교통량감축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부담금을 현실화하고 부담금 경감을 위해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을 시행할 경우 부담금경감 혜택을 보다 제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제출하는 교통량감축이행계획서에 대해서는 이행계획서의 실효성을 확인·보완케 하여 부실이행계획서를 근원적으로 방지하고, 부담금 징수자에 대하여서는 사후 이행확인을 철저히 수행하여 이행계획서대로 실행되어지는 지를 관리하는 제도(가칭 교통수요감축이행관리제도)의 도입을 검토하여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는 제도적 개선책을 제안하고자 함에 본 고의 목적이 있다.

II. 교통유발부담금제 운영현황 및 문제점

1. 교통유발부담금제 운영 현황

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18조에 근거하여 징수되는 교통유발부담금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하여 시행되고 있다.

-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근거 연1회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 징수함
- 부과대상시설
 - 당해시설물의 각층 바닥연면적이 1,000㎡ 이상인 시설물
(주거용 및 주차장시설면적 제외)
- 부과대상자
 - 부과기준일(매년 7월 31일) 현재 부과대상 시설물의 소유자
- 부과기간
 - 전년도 8월 1일 - 금회 년도 7월 31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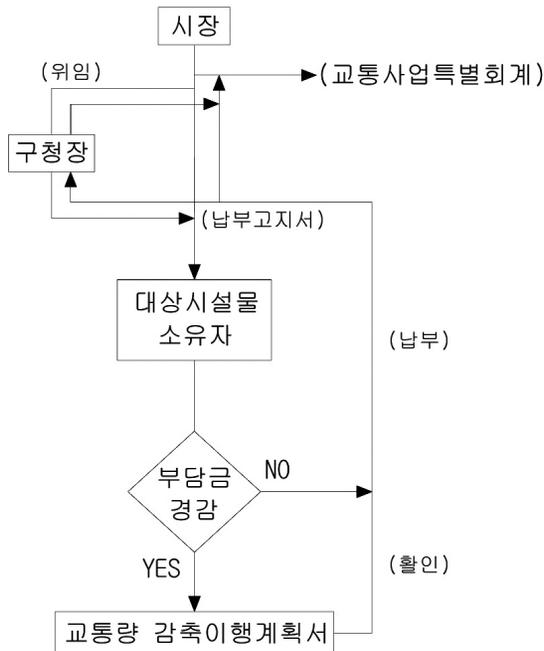
○ 부담금 산정 산식

- 단일용도 시설물의 부담금 :

시설물의 각층바닥면적의 합계×단위부담금×유발계수

- 복합용도 시설물의 부담금 :

시설물의 용도별 각층바닥면적의 합계에 따라 계산한 부담금을 합한 금액



<그림 1> 교통유발부담금 징수 과정도

○ 단위부담금 적용기준 (서울시사례)

- 연면적이 3,000㎡ 이상이고 부설주차장 규모가 10대 이상인 시설물 1㎡당 700원

- 연면적이 3,000㎡ 미만이거나 부설주차장 규모가 10대 미만인 시설물 1㎡당 350원

○ 납부기간

- 부과년도 9월 16일 - 9월 30일

- 부담금 사용용도
 - 서울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수입 : 70-90%
 - 자치구 사무처리비용 : 10-30%
- 부담금 경감 사례
 - 최고 90%까지 감면 가능함
- 2003년 기준의 전국에 걸쳐 진행된 전국 현황 (2003년)
 - 부과대상금액 : 1,215억원

〈표 1〉 경감대상 실례 (2001년)

업체명	경감이행프로그램	경감율
은평구청	10부제	10%
	통근버스운영	2.5%
	승용차이용제한	10%
은평문화예술회관	10부제 주차장부분 유료화	10% 10%
시립서대문병원	5부제 통근버스이용	20% 7.02%
은경빌딩	10부제 주차장부분유료화	10% 10%
서부경찰서	2부제(01.3.1-7.31) 10부제(00.8.1-'01.2.28)	20% 10%
국립환경연구원	10부제	10%
경산빌딩	10부제 주차장부분 유료화	10% 10%

〈표 2〉 교통량 감축활동별 감면율(2005)

구분	감축활동 종류별									
	승용차 자율부제 운영			주차장 유료화	통근버스 운영	보조금 지급	시차 출근	승용차 함께타 기	자전거 이용	대중교통의날
	10	5	2							
조건	종사자 및 이용자 참여			9시간 이상	출·퇴근시 운영 및 종사자 10%이상 좌석확보	교통카드 또는 승차권 3만원 상당 이상	09시 기준 1시간 이상	종사자 10%이상 참여		월 1회이상 .종사자 50%이상 참여
감면율 (%)	10 이상	20 이상	30 이상	10 이상	10 이상	10 이상	5 이상	5 이상	5이상	2 이상

* 위 기준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따라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음(건교부 보도자료)

〈표 3〉 2003년 서울시 교통유발부담금 고액납부 건물 현황

순위	시설물	부담금징수액(억)	비고
1	삼성동 코엑스컨벤션센터	6.52	
2	반포동 센트럴시티빌딩	4.53	
3	잠실동 롯데쇼핑	4.04	
4	잠실동 롯데월드	2.74	
5	소공동 호텔롯데	2.66	
6	가락동 청과물시장	2.51	
7	목동 현대백화점	2.28	
8	소공동 롯데쇼핑	2.11	
9	풍납동 서울아산병원	2.10	
10	구로동 애경백화점	1.82	

2. 문제점

- ① 앞에서 제시된 자료와 같이 부담금 경감률 적용을 위한 교통량감축활동의 비현실성으로 실질적인 교통량감축 효과가 미미.
또한 회사 내에서 주차요금을 보조할 수 있으며, 소득 수준이 높은 간부급에겐 주차비 부담이 낮고 차량보유자의 신규 차량이용으로 대체됨으로 실제 교통량감축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음.

〈표 4〉 유발부담금 경감 사례 가정

- 전체상근자 150인
- 차량 1대 보유자 120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량이용자 30인(회사내 간부급이상) (차량2대 보유자 6인 : 차량이용자의 20%) • 차량 비이용자 90인 (시설물외부 주차나 대중교통이용)
- 대중교통이용자 최대 120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부제 운영시 경감률 30% • 2부제 운영 전 : 차량이용대수 30대 • 2부제 운영 후 : 차량이용대수 30대(차량구성만 변화됨) [기존차량이용자 15대(50%) + 6대(2대보유자) + 9대(보유자중 이용)]
- 통근버스 운행시 경감률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행전 : 차량이용 30대 • 운행후 : 차량이용 30대 + 통근버스 1대 (교통량은 31/30=3.3% 증가됨) • 통근버스 이용 30인 + 대중교통이용 90인 (30인 감소)
- 주차장 유료화시 경감률 10%

- ② 교통량감축이행계획서의 작성 및 관리가 형식적이고 사후 확인 어려워 실제적인 효과가 있는지 증명하기가 어려움.
- ③ 교통유발부담금 담당행정인력의 부족과 잦은 보직이동으로 전문성이 부족함
- ④ 준조세화와 기본적 할인 경감률로 간주되어 교통량 감축에 대한 인식 부족
- ⑤ 부담금이나 경감액이 세입자에게 전가되고 세입자 역시 외부주차료보다 저렴하여 교통량감축 유발욕구가 부족함

Ⅲ. 교통수요감축 이행관리제도 도입방안

1. 의의

감독공무원의 인력 및 전문성부족을 해소하고 교통감축이행계획서작성의 실효성 증대 사후관리 체계화로 실제적인 교통유발시설물 유출입교통량감축을 통한 주변 교통혼잡 완화를 도모함

2. 대상시설규모 구분과 경감대상 신청

소규모 : 부과액 1,000만원미만

중규모 : 부과액 1,000만원 ~ 5,000만원미만

대규모 : 부과액 5,000만원 이상으로 하고 교통유발부담금대상시설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교통량감축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부담금 경감을 의무적으로 신청하게 함

3. 기준교통량 설정과 경감을 적용

각 시설물에 대해서 주차장여건과 주차동선 등을 고려하여 최대 주차가능대수를 산정하여 이를 기준교통량으로 설정함 단 방문자용 주차는 용도와 시설특성에 따라 최대 주차가능대수의 일정비율을 적용함

기존에는 각 교통량 감축활동에 따라 부담금에 대한 경감율을 자동 적용 하던 것을 기준교통량에 비해 실제 교통량 감축정도를 산정하고 이에 비례 하여 경감율을 적용함. 즉 10%의 경감율을 적용받으려면 기준교통량의 10%가 감축되어야 함.

경감률 적용은 실제 교통량감축 비율을 적용하되 최대 경감율 기준은 건 교부 권고치를 준용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따라 조례로 달리 정 할 수 있음

4. 이행계획서 작성 및 확인관리 규정

대상시설규모별 이행계획서 내용을 달리하며 현실여건 및 실행가능성을 고려하여 교통감축활동의 선정, 기준교통량과 경감율을 산정하여 제시함.

- 소규모 시설 : 이행계획서만 작성
- 중규모 시설 : 이행계획서 작성과 연4회 정기적 이행확인 점검
- 대규모 시설 : 이행계획서 작성과 월1회 정기적 이행확인 점검

5. 이행계획 관리방법 규정

1) 공동확인제

이행계획서 제출 후 이행확인 관리규정을 정하는 데 대상시설물 관리자 (또는 소유주)와 이행관리자간의 공동 확인토록 함

이행확인 관리자가 현장 방문하여 이행여부 확인 후 시설물관리자에게 확인을 득하면 확인 이후 다음 확인기간 동안은 시설관리자의 책임이지만 정해진 확인 기일에 확인을 득하지 않고 이후 미이행 적발 시는 이행확인자의 책임임

2) 첨단 기기사용에 의한 확인

기준교통량과 실제 교통량감축 확인을 시설물 출입구에서의 검지기장치 등 첨단기기를 사용하여 시행함

6. 관리인 자격 및 선정

관리인자격은 교통전문가(교통기술사)로 하며 관리인 선정은 해당징수기관에서 해당 경감대상 신청시설물에 대해 매년 선정하도록 하며 자격점수(경력, 실적, 중복도, 벌점 등)와 관리 수수료 제시액을 가중합계하여 최고 점수자를 선정함

7. 관리수수료

기준관리수수료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액×수수료율×(1+경감율)로 하되 수수료율은 시설규모별로 0.05~0.15로 함.

8. 계획서 작성 및 관리 부실 시의 제재규정

감독기관의 부담금 관리위원회에서 불시 감독하여 이행계획서의 불성실 작성이나 계획서대로 이행되지 않는 시설 적발 시 범칙금을 부과하거나 영업정지하도록 하는 제재규정 제시

범칙금=수수료×(1+경감율), 영업정지일수=기본일수×(1+경감율)

Ⅳ. 법제도 개선 방안

1. 부담금 경감에 대한 법조문

1)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0조 (부담금의 경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다.

1. 시설물의 소유자가 휴업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30일 이상 그 시설물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2.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조합이 시설물을 출입하는 교통량을 감축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때
3. 그 밖의 공익상 불가피하거나 교통수요관리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제24조 (부담금의 경감) ① 부과대상 시설물의 소유자가 휴업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30일 이상 당해 부과대상시설물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그 사실을 확인하여 실제 사용하지 아니하는 기간에 상당하는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부과대상시설물 안에 근무하는 종사자 또는 당해시설물을 이용하는 자의 교통량을 100분의 10 이상 감축한 부과대상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의 교통량 감축계획을 이행한 부과대상시설물의 소유자에 대하여 별표2의2의 교통량 감축활동 종류별 부담금 경감율에 따라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100분의 90 범위 안에서 이를 경감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에 속하는 부과대상시설물에 대하여는 부담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경감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경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이 경감되는 부과대상 시설물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2. 법제도의 개선

앞에서 고찰한 바와 같은 교통량감축이행관리계획 수립 운영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하여 관련법과 시행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개정(안)

법 제20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부담금을 경감받고자 하는 자가 교통량감축이행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신고한 경우”

2)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법 제24조 제4항 및 제5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신설한다.

④ 법 제20조4항에 의하여 교통량감축이행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신고한 시설의 경우 이행감축효과비율만큼의 부담금을 경감한다.(신설조항)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경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이 경감되는 부과대상시설물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변경조항)

3.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보완

각 시,군,구의 조례에 교통량 감축 이행관리 제도를 반영케 한다.

V. 결론

최근에 유류값 인상과 도시환경문제에 대한 경각심 제고에 더하여 지구온난화방지를 위한 교토의정서의 발효가 도래되고 출·퇴근시 늘상 겪는 교통혼잡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것에 대한 근원적 원인을 제공하는 교통량의 감축이 이루어지지 않고는 해결 될 수가 없다고 판단된다.

선진외국에 있어서도 공급확대를 통한 교통문제해결은 이미 한계에 도달했음을 경험한 이후 교통수요관리방안이 그 대안으로 인식되고 있다.

대중교통이용 증대와 함께 개별 시설물에 대한 교통량감축을 유도하는 교통유발부담금 제도는 교통수요관리의 가장 중요한 방안이 되고 있다. 교통량 감축 이행시의 이행관리제도는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을 신청하는 시설물에 대해 실질적 교통량감축을 유도할 뿐만 아니라, 이를 확인하고 관리하는 제도로서 법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려 되며, 또한 여기에는 교통전문가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 보다 확실한 성과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참고자료〉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1999년 이전 합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부과	징수	부과	징수	부과	징수	부과	징수	부과	징수
합계	821,080	724,490	79,042	72,661	89,153	82,441	105,973	89,729	121,264	99,075
서울	498,537	412,454	43,878	41,030	46,797	44,568	59,793	47,262	64,732	50,556
부산	69,726	67,460	7,452	6,883	8,211	7,541	8,478	7,943	9,667	8,958
대구	36,958	35,352	3,603	3,402	3,858	3,697	4,196	4,013	4,736	4,426
인천	38,784	34,351	3,254	2,836	4,437	3,949	4,977	4,450	7,669	5,133
광주	23,423	21,811	2,142	1,911	2,926	2,732	3,360	3,131	3,854	3,353
대전	21,754	29,052	3,686	3,421	3,958	3,612	4,332	3,888	4,760	4,144
울산	7,265	10,756	962	879	1,346	1,257	1,495	1,383	1,929	1,718
경기	79,814	70,316	9,182	8,110	11,913	10,103	13,071	11,809	16,486	14,200
강원	3,741	3,430	551	493	581	525	609	562	645	597
충북	8,781	8,495	854	814	1,055	987	1,141	1,087	1,370	1,258
충남	2,460	2,379	268	246	371	352	490	462	671	604
전북	7,965	9,504	1,058	714	1,137	796	1,303	1,174	1,578	1,415
전남	1,413	1,239	175	153	179	163	193	318	207	182
경북	9,388	8,439	869	767	928	832	977	878	1,057	926
경남	11,071	9,452	1,108	1,002	1,456	1,327	1,558	1,369	1,903	1,605

전교부 보도자료, 2004. 5.